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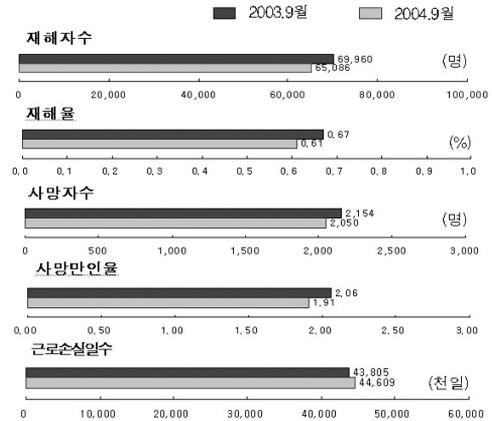
2004년도 3/4분기까지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

1. 총괄

구분	2004. 9월말	전년동기	증감	증감율(%)
○ 사업장수(개소)	1,001,084	969,474	31,610	3.26
○ 근로자수(명)	10,713,193	10,473,350	239,843	2.29
○ 재해자수(명)	65,086	69,960	-4,874	-6.97
• 업무상사고자수	58,333	63,789	-5,456	-8.55
• 업무상질병자수	6,753	6,171	582	9.43
-사망자수	2,050	2,154	-104	-4.83
• 업무상사고 사망자수	1,071	1,091	-20	-1.83
• 업무상질병 사망자수	979	1,063	-84	-7.90
-요양자수	63,036	67,806	-4,770	-7.03
• 업무상사고 요양자수	57,262	62,698	-5,436	-8.67
• 업무상질병 요양자수	5,774	5,108	666	13.04
○ 재해율(%)	0.61	0.67	-0.06	-8.96
○ 사망만인율	1.91	2.06	-0.15	-7.28
○ 근로손실일수(일)	44,609,199	43,805,641	803,558	1.83
○ 산재보상금(백만원)	2,095,638	1,793,549	302,089	16.84
○ 경제적손실액(백만원)	10,478,190	8,967,745	1,510,445	16.84

※ 근로자수는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, 매월 기준 근로자수는 익월 25일경 확정됨.

※ 건설업 근로자수 = (연간공사실적액 × 노무비율) ÷ (건설업 월평균임금 × 12월)



전체 사업장 1,001,084개소에 10,713,193명의 근로자가 종사했던 3/4분기까지의 전국 산업현장에서 65,086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다. 이는 전년 동기 69,960명 대비 △4,874명(△7.0%) 감소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산업재해는 감소하고 있다.

그로 인해 재해율도 0.61%로 전년 동기 0.67%보다 △0.06%p가 감소하였다.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도 2,05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04명이 감소하여 사망만인율 1.91(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, 전년 동기 0.15P 감소)로 나타났다.

그러나 산업재해가 줄어든 반면 근로손실일수는 44,609천일로 전년 동기 43,806천일에 비해 803천일(1.8%) 증가하였고, 경제적손실액도 전년 동기보다 1조 5천억원이 증가한 약 10조 478억원에 달한다. 이는 산업재해의 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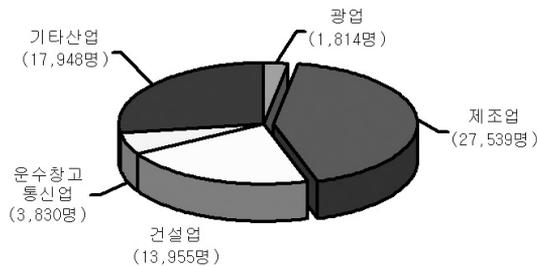
2. 업종별

업종별 재해자수는 제조업이 27,539명(42%)으로

구 분	근로자수	2004. 9월				증 감	
		재해자수(사망자)			재해율 (사망만인율)	재해자수 (사망자)	재해율 (사망만인율)
		계	업무상사고	업무상질병			
총 계	10,713,193	65,086 (2,050)	58,333 (1,071)	6,753 (979)	0.61 (1.91)	-4,874 (-104)	-8.96 (-7.28)
광 업	16,674	1,814 (331)	302 (30)	1,512 (301)	10.88 (198.51)	616 (-21)	51.32 (-6.08)
제 조업	2,898,677	27,539 (482)	24,355 (271)	3,184 (211)	0.95 (1.66)	-2,330 (-52)	-9.52 (-11.70)
건 설업	2,412,635	13,955 (545)	13,690 (456)	265 (89)	0.58 (2.26)	-2,506 (3)	-9.38 (7.62)
전기가스 수도업	50,579	88 (7)	76 (3)	12 (4)	0.17 (1.38)	-8 (-3)	-10.53 (-31.68)
운수창고 통신업	649,285	3,830 (169)	3,455 (93)	375 (76)	0.59 (2.60)	-507 (9)	-11.94 (5.69)
기타산업	4,685,343	17,860 (516)	16,455 (218)	1,405 (298)	0.38 (1.10)	-139 (-40)	-9.52 (-14.06)

* 기타산업은 농·임·어업, 전기·가스·상수도업, 금융보험업,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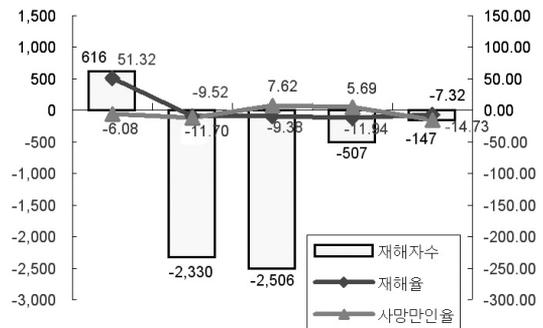
가장 많고, 건설업이 13,955명(21%)으로 나타났다.



<업종별 재해자 분포도>

전년 동기대비 재해자수 및 재해율은 광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감소하였다. 특히 전기가스수도업과 운수창고통신업에서의 산업재해가 10%를 넘는 감소를 보여 눈에 띈다. 그러나 사망만인율에서는 광업, 제조업, 기타산업에서 감소한 반면, 건설업과 운수

창고통신업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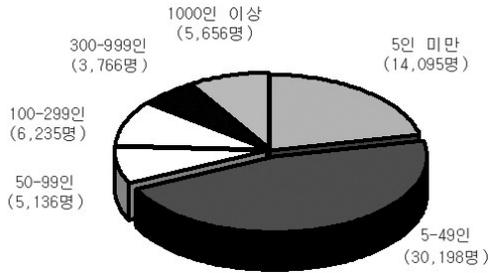


<전년 동기대비 업종별 재해 증감 현황>

3. 규모별

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기타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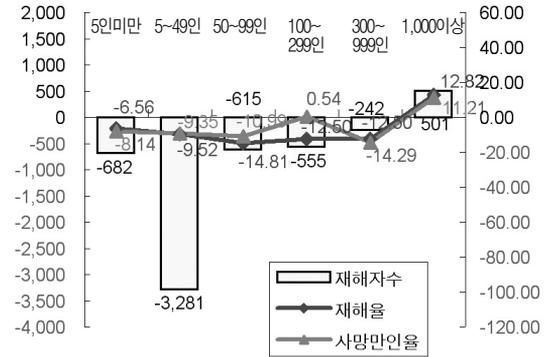
최신 안전정보



<규모별 재해자 분포도>

사업장 규모별 조사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자의 68.1%(44,293명)와 전체 사망자의 54.5%(1,118명)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.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자의 21.7% (14,095명)와 전체 사망자의 17.0%(348명)가 발생하여 여전히 중소

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정책적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였다.



<전년 동기대비 규모별 재해 증감 현황>

구 분	근로자수	2004. 9월				증 감	
		재해자수(사망자)			재해율 (사망만인율)	재해자수 (사망자)	재해율 (사망만인율)
		계	업무상사고	업무상질병			
총 계	10,713,193	65,086 (2,050)	58,333 (1,071)	6,753 (979)	0.61 (1.91)	-4,874 (-104)	-8.96 (-7.28)
5인 미만	1,232,679	14,095 (348)	13,507 (233)	588 (115)	1.14 (2.82)	-682 (-23)	-6.56 (-8.14)
5인~49인	3,976,514	30,198 (770)	28,560 (456)	1,638 (314)	0.76 (1.94)	-3,281 (-78)	-9.52 (-9.35)
50인~99인	1,105,071	5,136 (188)	4,644 (102)	492 (86)	0.46 (1.70)	-615 (-17)	-14.81 (-10.99)
100인~299인	1,764,545	6,235 (327)	5,253 (144)	982 (183)	0.35 (1.85)	-555 (18)	-12.50 (0.54)
300인~999인	1,340,691	3,766 (250)	2,769 (79)	997 (171)	0.28 (1.86)	-242 (-19)	-12.50 (-14.29)
1,000인 이상	1,293,693	5,656 (167)	3,600 (57)	2,056 (110)	0.44 (1.29)	501 (15)	12.82 (11.21)

4. 산업별(중분류) 재해 현황

구 분	근로자수	재해자수	사망자	재해율	사망만인율
총계	10,713,193	65,086	2,050	0.61	1.91
광업 소계	16,674	1,814	331	10.88	198.51
석탄광업	6,074	1,460	295	24.04	485.68
금속 및 비금속광업	210	95	18	45.24	857.14
채석업	859	57	2	6.64	23.28
석회석광업	1,585	26	0	1.64	0.00
제염업	187	2	0	1.07	0.00
기타광업	7,211	161	15	2.23	20.80
연탄 및 응집고체연료생산업	548	13	1	2.37	18.25
제조업 소계	2,898,677	27,539	482	0.95	1.66
식품제조업	184,167	1,527	29	0.83	1.57
담배제조업	3,289	6	0	0.18	0.00
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(갑)	140,358	480	14	0.34	1.00
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(을)	131,007	955	16	0.73	1.22
제재 및 베니어판제조업	9,563	304	3	3.18	3.14
목제품제조업	39,733	922	7	2.32	1.76
펄프·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	46,278	514	16	1.11	3.46
신문·화폐발행, 출판업 및 경인쇄업	82,426	150	9	0.18	1.09
인쇄업	40,216	308	4	0.77	0.99
화학제품제조업	266,186	2,174	50	0.82	1.88
의약품 및 화장품향료제조업	39,475	112	2	0.28	0.51
코크스 및 석탄가스제조업	89	3	0	3.37	0.00
고무제품제조업	52,751	765	14	1.45	2.65
도자기제품제조업	11,143	97	10	0.87	8.97
유리제조업	26,255	305	6	1.16	2.29
요업 또는 토석제품제조업	31,883	415	18	1.30	5.65
시멘트제조업	7,298	41	1	0.56	1.37
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	189,294	4,168	61	2.20	3.22
금속제련업	29,159	65	5	0.22	1.71
금속재료제품제조업	53,589	846	16	1.58	2.99
도금업	27,599	335	13	1.21	4.71
기계기구제조업	281,856	3,822	63	1.36	2.24
전기기계기구제조업	141,509	760	5	0.54	0.35

최신 안전정보

구 분	근로자수	재해자수	사망자	재해율	사망만인율
전자제품제조업	439,435	704	22	0.16	0.50
선박건조 및 수리업	111,698	1,802	33	1.61	2.95
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(갑)	171,322	2,468	20	1.44	1.17
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(을)	155,569	1,859	17	1.19	1.09
계량기·광학기계·기타정밀기구제조업	56,989	244	5	0.43	0.88
수제품제조업	29,381	190	3	0.65	1.02
기타제조업	99,160	1,198	20	1.21	2.02
전기·가스 및 수도업 소계	50,579	88	7	0.17	1.38
전기·가스 및 수도업	50,579	88	7	0.17	1.38
건설업 소계	2,412,635	13,955	545	0.58	2.26
일반건설공사(갑)	2,412,635	13,955	545	0.58	2.26
운수창고 및 통신업 소계	649,285	3,830	169	0.59	2.60
철도, 궤도 및 사도운수업	24,883	140	3	0.56	1.21
자동차여객운수업	290,190	1,547	81	0.53	2.79
화물자동차운수업	16,972	358	24	2.11	14.14
수상운수업,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	92,456	1,005	35	1.09	3.79
항공운수업	26,250	48	0	0.18	0.00
운수관련서비스업	87,886	223	13	0.25	1.48
창고업	22,293	216	5	0.97	2.24
통신업	88,355	293	8	0.33	0.91
임업 소계	74,959	547	11	0.73	1.47
벌목업	682	47	4	6.89	58.65
기타의 임업	74,277	500	7	0.67	0.94
어업 소계	438	32	5	7.31	114.16
어업	438	32	5	7.31	114.16
농업 소계	29,986	258	17	0.86	5.67
농업	29,986	258	17	0.86	5.67
기타의 사업 소계	4,219,470	16,612	460	0.39	1.09
농수산물위탁판매업	10,103	66	0	0.65	0.00
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	383,589	2,662	99	0.69	2.58
위생 및 유사서비스업	127,819	1,559	41	1.22	3.21
건설기계관리사업	9,786	254	18	2.60	18.39
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	19,937	206	2	1.03	1.00
기타의 각종사업	3,668,236	11,865	300	0.32	0.82
금융보험업 소계	360,490	411	23	0.11	0.64
금융보험업	360,490	411	23	0.11	0.64

산재관련소식

노동부 발표 고용·산재보험 적용확대 계획(안)

산재보험의 적용범위 확대

■ 적용확대 계획

지행	고용보험	산재보험
'0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 완화 - "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"의 범위 축소 ※ 예 : 2월 이상 체불로 이직 → 1월 이상 ※ 노동부장관 고시 개정 추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천만원 미만 면허소지 건설공사, 법인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적용을 위해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○ 특수고용관계종사자 적용을 위한 연구용역, 법령개정 등
'0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용근로자 적용(205만명) ※ '02.12월 고용보험법 개정 ○ 국가·자치단체 공공근로종사자, 60세 이후 새로 고용된 자 적용 ※ '02.12월 고용보험법 개정 ○ 단시간근로자 적용 제외 축소 - 1주 18시간 → 15시간만 ※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중('03년중) ○ 건설업 적용 제외 축소 - 공사금액 3억4천만원 → 2천만원 검토 ※ 노동부장관 고시 개정 추진('03년중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천만원 미만 면허소지 건설공사, 법인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적용(7만4천명) ※ '03년중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○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- 시행시기는 추후 결정
'05		
'05 ~ '07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발적이직자중 장기실업자(6개월) 실업급여(1/2) 지급 - 시행시기는 재정영향 등을 고려·결정 ※ 비정활인구 유입에 따라 2,751(37만명) ~ 6,822억원(92만명) 소요 ※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('04년중) 	

- 2005.1.1부터 건설공사와 농림어업에 대한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.
- 2천만원 미만 면허건설공사와 법인인 5인 미만 농림어업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적용(2003.5.7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)
- 보험료 징수 및 급여, 전산프로그램 개선 등 세 부준비를 위하여 2005.1.1부터 시행
-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
- 골프장 경기보조원,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 미적용
-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중
-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직업군 선정(재해율, 근로자성이 높은 직종 등) 실태조사, 외국사례 등
- 금년중 적용방안을 마련하여 '04년중 관계법령을 개정, '05년이후 적용할 계획
- 자영업자와 근로자가 아닌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.
- 재해로부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위험작업자 영업자(화물지입차주 등)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50인 미만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(가족종사자 등)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개정중
- 구체적 가입대상은 '04년 시행령 개정시 반영 계획

